

# 대전광역시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7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4. 27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조직의 통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감경혜택을 부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휴양림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유료시설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을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명칭 변경함(안 제2조의2 제1항).
- 나. 시설사용료의 감경 대상자에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를 추가함(안 제6조의2).
- 다. 시설사용료를 일부조정함(안 별표 1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
 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 - 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  - (3) 입법예고 : 2009. 4. 3. ~ 4. 13. / 접수의견 없음

## 대전광역시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·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중 “대전광역시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”을 “대전광역시공  
원관리사업소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 
별표 1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휴양림 시설사용료(제6조 관련)

2. 회의실

(단위 : 원)

시 설 별	규 모	사용요금	비 고
회의실	181㎡	100,000	○ 4시간 사용 기준
		200,000	○ 1일 사용 기준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제2조의2(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)</b></p> <p>①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은 휴양림의 관리계획 및 숲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휴양림의 관리계획은 3년마다, 숲체험 학습 운영계획은 매년도 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6조의2(시설사용료의 감경)</b> (생략)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[별표 1]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(제6조 관련)</p> <p><b>2. 세미나실 및 식당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단위 : 원)</span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시 설 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규 모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사용요금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세미나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형 (181㎡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,000</td> <td rowspan="2">○ 사용요금은 1회 3시간 기준임 ※ 추가 사용의 경우 : 1시간당 60,000원 추가징수 (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형 (40㎡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식 당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0,000</td> <td>○ 사용요금 1일(당일 14:00부터다음날 12:00까지) 사용 기준이며, 사용시간 1시간 이상 지체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별	규 모	사용요금	비 고	세미나실	대형 (181㎡)	200,000	○ 사용요금은 1회 3시간 기준임 ※ 추가 사용의 경우 : 1시간당 60,000원 추가징수 (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)	소형 (40㎡)	100,000	식 당	75㎡	150,000	○ 사용요금 1일(당일 14:00부터다음날 12:00까지) 사용 기준이며, 사용시간 1시간 이상 지체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	<p><b>제2조의2(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계획)</b></p> <p>①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6조의2(시설사용료의 감경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</p> <p>[별표 1]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(제6조 관련)</p> <p><b>2. 회의실</b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단위 : 원)</span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시 설 별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규 모</th> <th style="width: 10%;">사용요금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회의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1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</td> <td>○ 4시간 사용 기준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,000</td> <td>○ 1일 사용 기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시 설 별	규 모	사용요금	비 고	회의실	181㎡	100,000	○ 4시간 사용 기준			200,000	○ 1일 사용 기준
시 설 별	규 모	사용요금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
세미나실	대형 (181㎡)	200,000	○ 사용요금은 1회 3시간 기준임 ※ 추가 사용의 경우 : 1시간당 60,000원 추가징수 (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)																								
	소형 (40㎡)	1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
식 당	75㎡	150,000	○ 사용요금 1일(당일 14:00부터다음날 12:00까지) 사용 기준이며, 사용시간 1시간 이상 지체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																								
시 설 별	규 모	사용요금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
회의실	181㎡	100,000	○ 4시간 사용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
		200,000	○ 1일 사용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관련법규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

제48조(설치) ①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자연학습, 산림체험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를 두고,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 밑에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를 설치한다.

제49조(소장)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0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공원내 시설의 유지관리
2. 공원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
3. 공원내 식물원·동물원의 관리운영
4. 공원미화에 관한 사항
5. 만인산자연휴양림 휴양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
6. 장태산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·운영
7. 산림자원 조성 및 육림관리
8.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

### □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

제40조(하부조직) ①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과, 장태산자연휴양림사무소를 둔다.

## □ 참고 자료

### ○ 타 지역 자연 휴양림 및 기관의 회의실 대여 요금 현황

휴양림명 / 기관명	회의실 면적	기준 인원	요금	사용 시간	비고
축령산 자연휴양림	231㎡	70명	100,000	09:00~18:00 (9시간)	
민주지산 자연휴양림	469㎡	180명	200,000	5시간	· 추가 1시간당 사용요금의 20% 징수
칠갑산 자연휴양림	35.54㎡	10명	50,000	1일	
숲체원	-	50명	120,000	4시간	· 빔프로젝트 요금 별도 3만원(4시간), 7만원(1일)
			250,000	1일	
대전역	126.72㎡	60명	50,000	1시간당	· 빔프로젝트, 냉·난방비, 노트북 대여료 별도
서울역	-	100명	70,000	1시간당	"

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09. 5. 20

교육사회위원회

## I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4. 27 대전광역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4. 27

다. 상 정 일 자 :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 
제3차 교육사회위원회(2009. 5.20)  
상정, 질의, 심사, 수정가결

## 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국장 손성도)

### 1. 제안이유

조직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감경혜택을 부여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, 휴양림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사용료의 감경 대상자에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를 추가함(안 제6조의2).
- 나. 시설사용료를 일부 조정함(안 별표1).

### Ⅲ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권태환)

본 조례안은 조직통합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,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감경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,

####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의2는 조직의 통합과 관련하여 “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”을 “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”으로 변경함.
- 안 제6조의2(시설사용료의 감경) 대상에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를 추가함.
- 별표1(안 제6조 관련) 제2호의 “세미나실 및 식당”을 “회의실”로 하고 사용요금과 기준을 세분화함.

##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조직통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, 사용료 감경대상에 “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”를 추가, 세미나실을 회의실로 명칭 변경 및 사용요금의 현실화, 이용실적이 저조한 소형세미나실과 식당을 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후 숲 체험 “만들기 공방”과 “직원용 복지관”으로 활용코자 하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음.
- 그러나, 안 제6조의2 제8호로 신설코자하는 “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”에 대한 감경규정은 명예시민증 소지자가 통상 외국인이나 타시·도 주민임을 감안할 때,  
  
이는,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제6조의2의 단서 조항인 “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”의 규정과 부합하

지 않으므로 명예시민증 소지자를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든지  
이와 관련된 단서 조항을 추가로 삽입 하든지 하는 등 이에 대  
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수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IV. **질의·답변 요지** : 생 략

V. **심 사 결 과** : 수정가결

VI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

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76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9. 5. 20.

제안자 : 교육사회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명예시민증 소지자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현행조례 제6조의2(시설사용료의 감경) 규정의 단서 조항에 단서 내용을 추가하여 명예시민의 예우를 강화하고자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“다만,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”를 “다만,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(제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로서”로 함(안 제6조의2 단서규정).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2(시설사용료의 감경)중 단서조항을 “다만,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”를 “다만,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(제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로서”로 함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의2(시설사용료의 감경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별표의 비수기에 한한다.</p> <p>1. ~ 7.(생략) &lt;신설&gt;</p>	<p>제6조의2(시설사용료의 감경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 <b>다만,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</b>로서 별표의 비수기에 한한다.</p> <p>1. ~ 7.(현행과 같음) 8.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</p>	<p>제6조의2(시설사용료의 감경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 <b>다만,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(제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)로서</b> 별표의 비수기에 한한다.</p> <p>1. ~ 7.(현행과 같음) 8.(개정안과 같음)</p>